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·청소년 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제333호 관련

발의연월일 : 2021년 09월 10일
제 출 자 :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「헌법」에서 보장하고 있는 “종교의 자유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에 중복하여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2조제4호 중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수정내용

○ 조문의 내용 중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
(안 제2조제4호 다목 및 라목)

- 다목 중 “생각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” 삭제
- 라목 중 “양심과 종교의 자유” 삭제

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·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·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4호 다목 중 “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,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”을 “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4호 라목 중 “표현의 자유, 양심과 종교의 자유,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”를 “표현의 자유,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”로 한다.

□ 수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~3. (생략) 4. “아동·청소년의 권리”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」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**권리** 중 아동·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 <신 설>	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~3. (현행과 같음) 4. “아동·청소년의 권리”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」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**사항** 중 아동·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 **가. 생존권: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,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,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** **나.보호권: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, 차별, 폭력, 고문, 징집, 부당한 형사처벌, 과도한 노동,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**	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~3. (현행과 같음) 4. “아동·청소년의 권리”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」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**사항** 중 아동·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 가. ~ 나. (개정안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다. 발달권: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, 교육받을 권리, 여가를 즐길 권리,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,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	다. ----------,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등
<신 설>	라. 참여권: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, 표현의 자유, 양심과 종교의 자유,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,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,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	라. ----------, 표현의 자유,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, ----------